

부 칙

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<제증명 수수료>란의

- 1. 신원에 관한 사항 중 “재직, 경력 및 퇴직에 관한 증명”, “연수 및 이수에 관한 증명”의 수수료 “400원”을 각각 “300원”으로 하고, “경기입상에 관한 증명”을 “각종 수상에 관한 증명”으로 하여 수수료 “400원”을 “300원”으로 하며,
- 3. 회계에 관한 사항 중 “물품 납품 및 공사 사실 등에 관한 증명”의 수수료 “600원”을 “300원”으로 하고, “원천세 공제에 관한 증명”, “교육비납입증명”, “학비감면증명”의 수수료 “400원”을 각각 “300원”으로 하며, “미확정 채권 양도에 관한 증명”, “보증금 납부(예치증명)”, “공유재산에 관한 증명”의 수수료 “600원”을 각각 “300원”으로 하고,
- 4. “학원,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증명”의 수수료 “600원”을 “300원”으로 하며,
- 5. “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”의 수수료 “400원”을 “300원”으로 한다.

<증명 이외의 수수료>란의

- 1. “중학교 입학 및 중·고등학교 전·편입학 배정 수수료”를 “고등학교 전·입학 배정 수수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「별표3」의 고등학교 명칭 번호 82 도봉고등학교를 “누원고등학교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중 초등학교(남부)의 “서울영원초등학교”란 다음에 “서울금동초등학교”란을, 초등학교(북부)의 “서울태랑초등학교”란 다음에 “서울덕암초등학교”란을, 초등학교(동작)의 “서울원신초등학교”란 다음에 “서울봉현초등학교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초등학교(남부)

번호	명 칭	위 치
60	서울금동초등학교	금천구 시흥동 산91-3

초등학교(북부)

번호	명 칭	위 치
58	서울덕암초등학교	노원구 상계동 1274